

신용정보 제공에 대한 고객 권리 안내

신용정보 제공에 대한 투자자 권리

1. 금융서비스 이용 범위

고객의 신용정보는 투자자가 동의한 목적만으로 사용되며, 제휴회사 등에 대한 정보의 제공·이용 동의여부와 관계 없이 금융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제휴회사 등에 대한 정보의 제공·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제휴 및 부가 서비스, 신상품·서비스 등은 제공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2. 투자자 권리의 내용

(1) 투자자에게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신용정보업감독규정」과 「신용정보업감독업무시행세칙」 등에 따라 아래의 권리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동 권리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① 신용정보제공사실 통보 요구권

- 고객은 신용정보회사 등이 본인의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주요내용 등을 알리도록 요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조회할 수 있도록 요구 가능

② 신용정보 열람 및 정정청구권

- 고객은 신용정보회사 등이 보유하는 본인정보의 열람 청구가 가능하며 본인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 이의 정정요구 및 정정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시정 요청 가능

③ 신용정보 제공·이용 동의 철회권 및 마케팅 중지 요구권

- 고객은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게 개인신용정보 제공동의를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개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행한 경우 동의철회의 대상 및 내용 등을 특정하여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유무선 통신, 서면 등의 방법에 따라 철회 가능

※ 동의를 받은 신용정보제공·이용자 외의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게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고객과 약정한 용역의 제공을 하지 못하게 되는 등 계약 이행이 어려워지거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고객이 동의를 철회하려면 그 용역의 제공을 받지 아니할 의사를 명확하게 밝혀야 함

※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를 설정하면서 동의를 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 동의 철회 불가

- 고객은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 대하여 상품이나 용역을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청구 가능

(2) 고객은 본인 신용정보를 개인신용평가회사(한국신용정보, 한국신용평가정보, 서울신용평가정보, 한국개인신용 등)를 통하여 연간 일정범위 내에서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개인신용평가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한국신용정보(주) : ☎ 02-2122-4000 인터넷 www.nice.co.kr
- 한국신용평가정보(주) : ☎ 02-3771-1000 인터넷 www.kisinfo.com
- 서울신용평가정보(주) : ☎ 1577-1006 인터넷 www.sci.co.kr
- 한국개인신용(주) : ☎ 02-708-6000 인터넷 www.kcb4u.com